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72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 허성무·임미애·이재관

김동아 · 임오경 · 황정아

양문석 • 이정헌 • 이강일

김 윤 · 김교흥 · 허종식

김병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 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을 "심의·의결(허가권자가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을 "심의·의결(전기신사업자와 허 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에 위탁할수 있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 전기위원회는 전력시 장에서의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
- 2.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
- 3. 기타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9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사업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설치 및 구성"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와 전기사업등과"를 "심의·의결과 전기사업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위원회의"를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로 한다.

- 제54조(전기위원회의 구성) 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자리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2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전기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5. 전기 또는 에너지 사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조의2(전기위원회 위원장)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제54조의3(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5조의 제목 중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2.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 3.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 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56조의 제목 중 "기능"을 "심의·의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관사무 중 다음"으로,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의 수

립을 건의할 수 있다"로 한다.

13의2.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의3. 제60조의6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는"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 체의 고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그 업무를"을 "심의·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필요한 자문이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조직 및 운영)"을 "(사무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를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무조직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및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위반행위 감시·평가 등을 위 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전력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전력시장 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 2.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 3.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약관의 요건 조사
- 4.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5. 송전사업자의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 6.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 7. 송전 · 변전 전기설비의 보안에 관한 지원
- 8.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 9. 전력시장 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 10. 전력시장 · 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정보공개
-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국제협력
- 12. 전력시장 · 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 13.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4.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0조의8(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9(업무의 독립성·중립성) ①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60조의10(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0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0조의12(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의13(「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제105조제2호 중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를 "제27조의2제5항에"로 한다.
- 제10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의11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법에 따라 새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 | | | | |
| 략) | 과 같음) | | | |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 2 | | | | |
| 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 | | | | |
|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 | | | | | |
| 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 | | | | | |
| 기위원회"라 한다)의 <u>심의를</u> | 심의·의 | | | | |
| 거쳐야 한다. | <u>결을</u> | | |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 |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 | | | |
| 분할·합병 등) ① (생 략) | 분할ㆍ합병 등) ① (현행과 같 | | | | |
| | <u>♥</u>) | | |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 ② | | | | |
|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 | | | | |
|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 | | | | |
| 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 | | | |
| 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 | 심의·의결을 | | | | |
| 치지 아니한다.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 | |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14.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⑥·⑦ (생 략)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생 략) 이용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 <u>심의·의결(허가권</u> |
|------------------------|
| <u>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u> |
| 경우는 제외한다)을 |
| |
| |
|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⑤ |
| |
| |
| |
| |
| |
| <u>5</u> |
| <u>억원</u>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⑥·⑦ (현행과 같음) |
|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
| 되어 소크 ㄷ/ ④ /퀴웨리 리스/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을---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 쳐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② 지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 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저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

| 3 |
|---------------------|
| |
| 심의·의결 |
| <u> </u> |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 |
| 행과 같음) |
| 2 |
| |
| 심의·의결 |
| <u> </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② |
| (현행과 같음) |
| 3 |
| |
| |
| |
| |
| 심의·의결 |
| <u> </u> |
| |
| |
| |
| <u>.</u> |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
| |

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 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 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 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지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 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 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 <u>심의·의결을</u> |
|-------------------|
| |
| |
| |
| · |
| |
| 심의 · 의 |
| <u>결을</u> |
| 1. ~ 6.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
| 의 부과·징수) ① |
| |
| |
| 심의·의결(전 |
| 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 • |
|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
| 제외한다)을 |
| |
| |
| |
| |
| |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 기 기 ~ 4 (생 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수 있다.

<신 설>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7 ① (생 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 | _ |
|-----------------------|---------------|
| | _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수 |) - |
| 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 |
| ⑤ | _ |
| | _ |
| | _ |
| | _ |
| | _ |
| <u>심의·의결을</u> | _ |
| | _ |
| | _ |
| | |
| <u>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u> | |
| 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입 | <u>}</u> |
|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0조 | <u>ر</u> _ |
| 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감독 | <u>-</u> |
| 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 |
| ① (현행과 같음) | |
| ② | _ |
| | _ |
| | _ |
| | _ |

| 상한을 정하여 | 고시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산업통 | 등상자원부장관은 |
| 미리 전기위원 | 회의 <u>심의를</u> 거 |
| 쳐야 한다. | |

③ (생략)

-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② (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②(생 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u>심</u> 의·의결 |
|----------------------|
| <u>을</u> |
| ③ (현행과 같음) |
|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현행 |
| 과 같음) |
| 4 |
| |
| 심의·의결 |
| <u> </u> |
| |
| 심의 · |
| 의결을 |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② |
| (현행과 같음) |
| 3 |
| |
| 심의·의결을 |
| |
| · ④ (현행과 같음) |
|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
| |
| <u>심의·의결을</u> |

④ (생략) <신 설>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 10의2. (생 략) <신 설>

11. · 12. (생략)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① --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한국전력거래소의 업 무에 관한 감독)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전력거 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
- 2.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
- 3. 기타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 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49조(기금의 사용) ------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사업

11. • 12. (현행과 같음)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 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 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 심의·의결과 |
|--------|
| 전기사업등에 |
| |
| |

<삭 제>

<삭 제>

-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 하는-----독립적으로 수행 하다.
 - 제54조(전기위원회의 구성) ① 전 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 다.
 -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

람

-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 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
 직기간은 합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 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 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자리에 15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3. 2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전기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

 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전기 또는 에너지 사용자 보 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신 설> <신 설>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직

제54조의2(전기위원회 위원장)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 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 변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위원의 임기) 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끝 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신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설>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생 략)

<신 설>

<신 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 제56조(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유)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 무)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 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2.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 3.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 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 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기위원회는 <u>다음</u> 각 호의 사항 <u>등</u>) ① -----<u>소관사무</u> 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 중 다음-----심의 정을 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14. (생략)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 를 요청한 사항

<신 설>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제58조(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한다.
- 1. ~ 13. (현행과 같음)
- 13의2.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 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사
- 13의3. 제60조의6에 따른 한국 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 항
- 14. (현행과 같음)
- ·의결을-----
-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 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질의하거나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그 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의 수립 을 건의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4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 제59조(전문위원회) ①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위워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 기관 ·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 • 단체의 고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 성 · 보존하여야 한다.

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심의 · 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필요한 자 문이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 제60조(사무조직) ① 전기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 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위원회에-----사무조직을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둔다.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등) 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및 전력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위반행위 감시·평가 등을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위"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 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원, 연 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 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신 설>

<신 설>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u>2. 명칭</u>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 2.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

 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

 사
- 3.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 업자의 약관의 요건 조사
- 4.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 5. 송전사업자의 설비의 보장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 6.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8조에 따 라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운
 영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이행관리 지원
- 7. 송전·변전 전기설비의 보안 에 관한 지원
- 8.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 9.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 10.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정보공

<u>개</u>

-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 13.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

 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4.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 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 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 금 및 보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설>

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의8(출연금)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 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0조의9(업무의 독립성·중립성) ①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 6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0조의10(관리·감독) ① 전력 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u><신 설></u>

<신 설>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 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0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 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의12(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3(「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93 | 조(벌 | 칙 | 적용 | 시 | 의 | 공무 | 원 |
|------|------|------|-----|----------|----|-----|---|
| 의 | 제) 디 | }음 | 각 호 | 호의 | 어느 | - 하 | 나 |
| 에 | 해당 | 하는 | 자는 | <u> </u> | 형받 |] | 제 |
| 129 |)조부 | 터 저 | 132 | 조까 | 지의 | 1 7 | 정 |
| 에 | 따른 | 벌견 | 식을 | 적용 | 할 | 때에 | 는 |
| 공 | 무원으 | 으로 . | 본다 | | | | |

1. • 2. (생략)

<신 설>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
 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 7.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
|-----------------------|
| 의제)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
| 제102조(벌칙) ①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6.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비밀 |
| 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 <u> </u> |
| 제105조(벌칙) |
| |
| |
| · 1.·1의2. (현행과 같음) |
| 2제27조의2제5 |
| 항에 |
| <u>0 11</u> |
| 3. ~ 7. (현행과 같음) |
| 제108조(과태료) ① |
| 1200-(11-) |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8. 삭 제

<신 설>

②・③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의2. 제60조의11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